

 안산대학교	대의원회운영규정	규정번호	5-1-1
		제정일자	2012.03.01.
		개정일자	2021.11.01.
		개정차수	2차
		소관부서	학생성공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의 교육이념과 학술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학과간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대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안산대학교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칭한다.

제3조(구성 및 제한) ① 대의원회는 각 학과를 대표하는 1인(과대표)으로 구성 한다.

② 대의원회에 의장, 부의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 대의원은 학생회 집행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임기) 대의원회 임기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임기 시작일은 학과별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임원선출) ①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투표하며, 최다득표 순으로 정하여 총장의 인준을 받는다.

② 간사는 대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선출은 해당학년도 2학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지위) 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7조(권한 및 의무) ① 대의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에서 상정한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심의 및 자문 사항

2.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 결산의 자문 사항

3.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집행부 임원이 회칙을 위반 하였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 해당책임자의 불신임(탄핵) 관한 사항.

4. 집행부회계, 서무 및 기타 사업발전에 대한 감사 사항

5.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선거 업무에 관한 사항

6. 학생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권한 사항

7. 기타 대의원회의에서 필요한 사항

② 대의원은 학생회비를 필히 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및 의결) ①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학생회장·학생부회장 불신임(탄핵)결의)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장·학생부회장이 본회 운영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불신임(탄핵)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불신임(탄핵) 결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상자는 즉시 사임 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장·학생부회장의 불신임(탄핵)이 확정된 경우 후임 학생회장·학생부회장의 선출은 학생회장선거규정에 따른다.

제11조(결과통지)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즉시 공고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기한) 집행부에서 상정한 제반안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며, 예산안은 대의원회의 동의 없이 증액 또는 신설할 수 없다.

제13조(재원) 대의원회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수입지출) 대의원회 수입 및 지출은 의장 책임하에 집행 결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